

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건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소관위원회																				
1	성남시2001년도 제1회일반및특별 회계추가정정예 산안	□ 제안이유 기정예산 편성후 국·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와 세입증감등 여건변동으로 세입·세출 정리가 불가피하여 추가정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□ 주요골자 (단위:백만원) <table> <tr> <th>구 분</th> <th>2001.제1회 추경예산액</th> <th>2001년도 기정예산</th> <th>증 감</th> <th>%</th> </tr> <tr> <td>계</td> <td>890,678</td> <td>785,051</td> <td>105,627</td> <td>13.4</td> </tr> <tr> <td>일반회계</td> <td>599,017</td> <td>527,916</td> <td>71,101</td> <td>13.4</td> </tr> <tr> <td>특별회계</td> <td>291,661</td> <td>257,135</td> <td>34,526</td> <td>13.4</td> </tr> </table>	구 분	2001.제1회 추경예산액	2001년도 기정예산	증 감	%	계	890,678	785,051	105,627	13.4	일반회계	599,017	527,916	71,101	13.4	특별회계	291,661	257,135	34,526	13.4	기획예산과	행정경제
구 분	2001.제1회 추경예산액	2001년도 기정예산	증 감	%																				
계	890,678	785,051	105,627	13.4																				
일반회계	599,017	527,916	71,101	13.4																				
특별회계	291,661	257,135	34,526	13.4																				
2	성남시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변경안	□ 제안이유 ○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원 발생된 토지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며 원활한 시장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○ 향토수종과 자원식물원을 조성하여 자연학습장및 이가장소로 이용할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하고 ○ 야탑동에 문화시설 부지를 매각하여 용도에 맞는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이 질높은 문화생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공간을 확대하고자 하며 ○ 보존가치가 있는 소규모 토지를 일반시민에게 매각하여 공익적 가치가 있는 공공용 부지 확보등 효율성이 높은 재산으로 대체 조성하고자 함	회 계 과	행정경제																				

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인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 원 회
3	성남시사무위임 조례중개정조례 안	□ 주요골자 ○ 취득(매입) : 일반회계 16,443,591천원 - 토지 97필지 115,453㎡ (15,231,111천원) - 건물 33동 3,031㎡ (1,212,480천원) ○ 처분(매각) : 일반회계 2,728,052천원 - 토지 4필지 4,484.7㎡ (2,728,052천원) □ 제안이유 ○ 구 청장애개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무중 주차장법에 의한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○ 지금까지는 구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함 (안 별표 1)	총 무 과	행정경제
4	성남시명예시민 증수여사후승인 안	□ 제안이유 ○ 우리시와 '98. 8. 31.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성 남시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있는 중화인민공 화국 심양시 진정고시장의 외자유치활동을 위한 한국방문기간(2001. 3. 13~3. 17)중인 동년 3월 15일(우리시 방문일) 성남시 명예시 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 심양시 와 ,우리시간의 우의증진 및 상호유대를 강화 하고자 하며 ○ 시의회가 폐회중이어서 사후에 승인을 얻고 지 함	총 무 과	행정경제

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인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 원 회										
5	성남시옴브즈만 설치및운영조례 안	□ 주요골자 ○수어대상자 <table border="1"> <tr> <th>국 적</th><th>소 속</th><th>직 위</th><th>성 명</th><th>연령</th></tr> <tr> <td>중화인민 공 화 국</td><td>심 양 시 인민정부</td><td>심양시장</td><td>진정고 (陳政高)</td><td>49세 (남)</td></tr> </table> ○수 어 일 : 2001. 3. 15 ○제안근거 : 성남시명예시민중수어조례 제2조 □ 제안이유 ○주민의 행정참여 욕구가 확대되고 주민여망에 부응하는 제도적인 외부통제·감시수단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○성남시옴브즈만설치및운영조례로 제정하여 주민의 고충민원을 신속히 조사·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등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. □ 주요골지 ○옴브즈만은 3인이내로 구성하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명함 (안 제6조) ○옴브즈만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여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의회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음(안 제7조, 제8조) ○옴브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 전문적, 기술적 지문을 구하기 위한 옴브즈만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함(안 제11조) ○옴브즈만의 직무관할 및 기능을 명시함 (안 제12조, 제 13조) ○옴브즈만은 집행기관에 설명요구, 관계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처리결과를'신청인'에게 통보하여야 함(안제15조, 제16조, 제21조)	국 적	소 속	직 위	성 명	연령	중화인민 공 화 국	심 양 시 인민정부	심양시장	진정고 (陳政高)	49세 (남)	시민봉사과	행정경제
국 적	소 속	직 위	성 명	연령										
중화인민 공 화 국	심 양 시 인민정부	심양시장	진정고 (陳政高)	49세 (남)										

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건명	부의안건요약	소관부서	소관위원회
6	성남시회계관계 공무원재정보증 조례개정조례안	□ 제안이유 ○ 회계관계 공무원 대상범위, 재정보증방법 및 재정보증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□ 주요골자 ○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징수관, 경리관, 재산관리관, 물품관리관, 채권관리관, 채무관리관, 지출원,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, 기타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로 함(안 제2조) ○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함(안 제3조) ○ 재정보증 한도액은 200만원이상으로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이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봄(안 제4조, 제5조) ○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함(안 제6조) ○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(안 제7조) ○ 시장은 보험증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증보험 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함(안 제8조)	총무과	행정경제

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안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 원 회
7	성남시성실납세자포상조례안	□ 제안이유 ○ 지방자치시대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포상함으로써 자긍심을 부여하고,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성실납세자포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. □ 주요골자 ○ 성실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 제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, 납세홍보를 통한 시민 납세의식 함양 및 세무행정에 크게 기여한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을 말함(안 제2조) ○ 포상은 시장이 행하며, 성실납세자상으로 함(안 제4조, 제5조) ○ 성실납세자를 심의·선정하기 위하여 성남시 성실납세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(안 제6조) ○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구청장, 시민단체,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음(안 제8조) ○ 포상은 매년 조세의 날에 정기적으로 시행함(안 제9조) ○ 포상을 받은 자는 성실납세자 지정대장에 등재하며 해당년도 성실납세자로 관리하고 탈세·채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함(안 제12조)	세 정 과	행정경제

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요약서

인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 원 회
8	성남시시세감면 조례중개정조 례안	□ 제안이유 ○ 임대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전,월세 상승의 세로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함. □ 주요골자 ○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전용면적 60평방미터이하에서 전용면적 85평방미터이하로 개정(안 제10조제3호)	세 정 과	행정경제
9	성남시소비자 보호조례중개정 조례안	□ 제안이유 ○ 소비자정보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 소비자 보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 강화, 소비자피해구제의 활성화, 유익한 소비자 생활정보 제공등 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현행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□ 주요골자 ○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유용한 생활정보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비자 정보센터를 설치·운영함(안 제18조제2호)	지역경제과	행정경제
10	성남시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	□ 제안이유 ○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위위사항을 구체화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 □ 주요골자 ○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제1항)	회 계 과	행정경제

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요약서

인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원회
11	성남시문화예술 공간및미술장식의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	○ 관리위탁된 공공시설에 행정·보존재산으로 사용·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포함된 경우 별도의 허가절차없이 위탁시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재산관리인은 위탁계약내 용에 사용·수익허가의 대상 및 범위, 허가 기간, 인건사용료 납부방법등을 포함시키도록 함(안 제5조 제2항) ○ 소규모 부적합 재산의 경우 관련토지 소유자 에게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(안 제7조제3항) ○ 맨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설치한 연구소, 창업 보육센터등 기업지원기관 및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함 (안제23조제10항) □ 제안이유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(2000. 1. 12. 공포 법률 제6132호) 및 동법시행령(2000. 10. 23. 공포, 대통령령 제16990호)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함. □ 주요골자 ○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을 판매 및 영업시설로 조정함(안 제2조) ○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경우 인면적 20,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2년개로 구분하여 건축비용의 비율을 달리 적용함(안 제6조) ○ 부칙내용 명시 및 조례상 법령의 변경된 조항을 조정함	문화체육과	사회복지

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원회
12	성남시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 제안	□ 제안 이유 현재 운영 중인 성남문화의 집을 포함하여 향후 신규 설치 운영될 문화의 집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. □ 주 요 골 자 ○ 목적에 향후 신규 설치 운영될 문화의 집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1조) ○ 위치는 성남시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함(안 제2조) ○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함(안 제6조)	문화체육과	사회복지
13	성남시야외공인장 운영·관리 민간위탁동의안	□ 제안 이유 ○ 2001년도 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임부의 조기추진을 위한 행정력을 지원하고 ○ 지방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 ○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하여 사무의 간소화 등 행정능률 향상도모 □ 주 요 골 자 ○ 위·수탁 사무 (협약안 제1조) ○ 위탁범위 : 위탁시설 및 부대시설 전반 운영관리 ○ 위탁사업자 선정 및 위탁방법 : 2001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의거 ○ 운영·관리 예산의 지원 : 예산편성 지침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후 승인요구하고 승인으로 경비를 지급함(협약안 제12조2항) ○ 지도감독 :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하거나 임부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도 감독권의 행사 및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할 수 있음(협약안 제15조)	공원관리과	사회복지

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건명	부의안건요약	소관부서	소관위원회
14	성남시영생관리 사업소사용료 징수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 안	□ 제안이유 남골당 이용자 범위확대 및 현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□ 주요 골자 ○ 남골당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인고자가 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하고 인고자의 범위를 배우자, 직계존·비속으로 확대함(안 제4조) ○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경우 거주지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었으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로 제한함(안 제6조)	영생관리사업소	사회복지
15	성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	□ 제안이유 성남시 폐기물소각장 운영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주변환경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업무를 원활히 수행코자함. □ 주요 골자 ·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10 및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함(안 제4조) · 기금은 영 제27조제1항의 지원결정 사항으로 협의된 사업,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비의 충당금,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운영경비의 결손충당금,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하여 결정된 사업에 사용하며,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(안 제5조)	청 소 과	사회복지

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요약서

인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원회
16	성남시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·관리조례안	· 조성된 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 관리하고 시장은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며,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대장, 기금지급대장, 현금출납부등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함(안 제6조) ·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및 지급조건은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 제10조에 의하며 수당은 기금에서 지급함(안 제7조) □ 제안이유 도시재개발법과 동법 시행령, 경기도도시재개발사업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및 위임된 재개발사업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함 □ 주요골자 ○ 기금의 재원중 시의 출연금으로 2002~2004년까지는 연 200억원씩, 2005~2016년까지는 연 100억원씩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한다.(안 제2조제3항) ○ 기금은 재개발에 따른 임시수용등의 조치를 위한 비용, 보조 및 융자,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건물소유자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융자 등에 사용함(안 제3조) ○ 시장은 기금의 융자계획에 대하여 매년도 초에 신청자격, 신청방법, 구비서류, 융자조건 등을 포함한 내용을 공고한다.(안 제8조) ○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"성남시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"를 둔다.(안 제10조)	도시개발과	도시건설

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소 관 위 원 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7	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의건청취안	□ 제안이유 수정·중원구 기상시가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립한 「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」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주요골자 ○ 재개발구역지정대상 ： 수복재개발 14개소(수정 10개소, 중원 4개소) 철거재개발 6개소(수정 1개소, 중원 5개소) ○ 사업방식별 사업비 (단위:억원) <table> <tr> <th>사업방식</th> <th>합 계</th> <th>재개발사업비</th> <th>이주단지조성비</th> </tr> <tr> <td>계</td> <td>25,986</td> <td>17,675</td> <td>8,311</td> </tr> <tr> <td>수복재개발</td> <td>12,236</td> <td>9,480</td> <td>2,756</td> </tr> <tr> <td>철거재개발</td> <td>13,750</td> <td>8,195</td> <td>5,555</td> </tr> </table> ○ 추정 재개발 소요사업비 (단위:억원, m²) <table> <tr> <th>구 분</th> <th>사업비</th> <th>면 적</th> <th>비 율</th> </tr> <tr> <td>계</td> <td>25,986</td> <td>2,419,836</td> <td>100%</td> </tr> <tr> <td>1 단계 (2002~2006)</td> <td>5,324</td> <td>379,634</td> <td>20.5%</td> </tr> <tr> <td>2 단계 (2007~2011)</td> <td>14,520</td> <td>1,113,952</td> <td>55.9%</td> </tr> <tr> <td>3 단계 (2011~2016)</td> <td>6,142</td> <td>926,250</td> <td>23.6%</td> </tr> </table>	사업방식	합 계	재개발사업비	이주단지조성비	계	25,986	17,675	8,311	수복재개발	12,236	9,480	2,756	철거재개발	13,750	8,195	5,555	구 분	사업비	면 적	비 율	계	25,986	2,419,836	100%	1 단계 (2002~2006)	5,324	379,634	20.5%	2 단계 (2007~2011)	14,520	1,113,952	55.9%	3 단계 (2011~2016)	6,142	926,250	23.6%	도시개발과	도시건설
사업방식	합 계	재개발사업비	이주단지조성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계	25,986	17,675	8,31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복재개발	12,236	9,480	2,75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철거재개발	13,750	8,195	5,55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사업비	면 적	비 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계	25,986	2,419,836	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 단계 (2002~2006)	5,324	379,634	20.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 단계 (2007~2011)	14,520	1,113,952	55.9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 단계 (2011~2016)	6,142	926,250	23.6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요약서

인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 원 회
18	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지정및 성남도시계획 시설(도로,하천) 결정의건칭취안	□ 제안이유 ○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 14조 규정에 의거 제한구역내에 취락지구를 지 정하여 이축토지의 원활한 공급과 ○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정비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구역내 거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코자 함 주요골자 ○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 : 13개지구, 774,800㎡, 주택 680동, 인구 4,628명 ○ 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 : 소로, 67노선, 연장 9,770m, 면적 70,774㎡ ○ 도시계획시설(하천)결정 : 소하천, 연장 1,777m, 면적 20,326㎡	도 시 과	도시건설